

2019년

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관련 쟁점

1. 추진 근거

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~중략~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⇒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시설장이 아닌 "법인"에게 위탁한 것

2. 현황

- ▷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명의(대표: 시설장)의 별도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을 발급받아 운영
- ▷ 시설 운영의 책임소지 발생 시, 위탁 법인이 아닌 “시설장 ” 혹은 ”시설” 책임
- ▷ 시설장은 고용관계상 위탁 법인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, 시설의 “사용자”로 간주되어 시간외 근로수당, 고용보험 가입 등 “근로자 ” 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함

3. 추진 경과

〈사회복지법인·시설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〉

- ▷ (2018. 02~05) 사회복지법인 · 시설 제도개선 TF 회의(총 3회)
- ▷ (2019. 01) 제도개선 설명회 실시(제도개선안 설명 및 의견청취)

※ 사회복지법인 · 시설 제도개선 TF 구성

보건복지부 주관, 사회복지직능단체, 비영리법인, 종교계 법인(한종사협),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 참석

4. 주요 개정 사항

▷ 사회복지시설 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명의로 변경

- 시설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를 해당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동일하게 함
- 수탁법인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함

▷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 설치 · 운영자의 명의로 할 것

※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42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: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사업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
4. 주요 개정 사항

▷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

- 동일 설치 · 운영자가 각각 설치 · 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
- 법인 사무국에서 법인에서 설치 · 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
- 시설 통합,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는 경우
- 출산 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해당기간 연장으로 대체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

▷ 종사자 채용 준수사항

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(법인)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**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· 고용계약**을 맺어야 함

▷ 행정처분 주체 및 종류

-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· 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처분명령도 해당 시설 설치 · 운영자(법인)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음

5. 주요 쟁점 Q&A



왜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통장 등을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가?



사회복지사업법 상 시설의 위탁, 운영자는 법인이기 때문

*근거:『사회복지사업법』제34조 제5항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5. 주요 쟁점 Q&A



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통장 명의 변경 시 문제점은 무엇인가?



○ 행정적 불편함 초래. 특히 금융기관 업무의 경우 ‘사용인감’만으로 은행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음

○ 자활기업, 사회적기업 등, 부설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(현재 별도 사업자등록) 법인 명의로의 변경 시 업종의 한계로 입찰의 한계 등 우려

5. 주요 쟁점 Q&A



종사자 채용 준수사항(법인 '직영직고 원칙')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?



- 시설 근로자가 법인 직원으로 신분 전환될 경우, 고용 관련 법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근로자를 계약제(기간제, 위탁기간 단위로 계약)로 채용하는 사례 증가하여 **고용안정성 저하**가 우려 됨.
- 법인 산하시설 직원들이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 할 경우, 직원 수 증가에 따라 **고용보험료, 장애인의무고용률**이 증가(현재 일부에만 적용되던 **법인가준 직원 수 산정**이 예외 없이 **모든 법인에 적용**)
- 특히, 학교법인, 의료법인 등 경우 시설 직원이 교직원 또는 병원 직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우려(향후 주목적사업이 **사회복지와 이질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기피** 현상 우려)
- 시설 내 각종 기간제(시간강사 등)계약 및 각종 업체와의 계약 시 **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(법인대표)와 계약**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.

5. 주요 쟁점 Q&A



행정처분 주체 및 종류신설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가?



법인 산하 일부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을 시, **법인전체에 영향 우려**



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통장을 법인 명의로 사용할 경우, 후원 및 지원사업(공동모금회 등)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?



○ 시설별 사업자등록증 내 **등록번호**가 부여됨으로 외부지원사업 신청은 시설별 신청이 가능.
계좌 경우 법인명과 시설명 **병기**가 가능하므로 **법인명(시설명)**으로 발부받아 사용 가능

5. 주요 쟁점 Q&A



개정 뒤, 법인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?



법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므로 보조금 또는 행정인력 지원 등 선결되어야 함



기타 다른 우려사항은 없는가?



- 법인의 위임을 받아 운영지원단체(교회, 사찰, 성당 등)가 실질적 시설 운영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바, 이런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**법인의 '직영직고 원칙' 이행은 현실적 한계**가 있음

6. 대안모색

1안 <개정 지침 전면 폐기>

○ 현실적 적용의 한계, 현장의 민원, 행정력 낭비 등을
고려하여 현 지침 개정안을 전면 폐기

6. 대안모색

2안 <현 지침 유지, 보완책 마련>



<시설장 근로자성 인정>

- 고용보험 의무가입, 시간외 수당 적용 등 시설장의 근로자로서 권리 보장
- 근로기준법과 퇴직연금법 상 고용주에 대한 해석이 달라 관련 주무부처(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)간 협의 필요



<시설 근로자(시설장 포함) 고용안정성 보장>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고용승계 관련 구체적 내용 삽입



<위탁법인 보조금 또는 인력 지원>

- 계약, 고용, 사무 등이 법인에 집중되어 행정력, 운영비 등이 과중되므로 법인 추가 지원 지사체 권고



<사회복지시설 부담금 지원>

- 고용보험료 상승분, 장애인 고용을 위한 비용 등 지사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

<개정사항 단계별 시행>

- 법인 및 시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시행기간 연장

7. 향후 추진 계획

▷ 회원기관 의견수렴

-1차 의견수렴 완료: 2019. 02. 11(월) ~ 02. 18(월)

-필요시 2차 의견수렴 추진 예정

▷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공동 의견서 작성 및 제출

-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동 의견서 작성

-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추진

**이 자료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복지세상게시판에 게시 예정이니
회원기관에서는 다운로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**